

부변경&gt;

(앞면)

현장확인서					처리기간			
					지체없이			
요청인 또는 신고인	성명		생년월일		대상자와의 관계			
	주소	(연락처: )						
위기상황	<input type="checkbox"/> 제1호 주소득자(主所得者) 사망·기출등의 사유로 소득상실	<input type="checkbox"/> 제2호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당한 경우		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제3호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·유기·학대	<input type="checkbox"/> 제4호 가구구성원의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		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제5호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	<input type="checkbox"/> 제6호 주(부)소득자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 영업곤란		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제7호 주(부)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	<input type="checkbox"/> 제8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		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(이혼)	<input type="checkbox"/>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(단전)		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(출소)	<input type="checkbox"/>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(단기 노숙)		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(복지사각지대발굴)	<input type="checkbox"/>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(통합사례관리)		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(자살고위험군)	<input type="checkbox"/>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(코로나19 무급휴직자)		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(코로나19 자영업자 등)							
긴급지원 대상자	대상자와의 관계	성명	생년월일	동거여부 및 미동거사유	건강상태 (장애.질병)	직업	월소득	비고
	본인							
※ 표에 미기재된 가구원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등초본 확인 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지원 결정								
현장확인 내용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원필요	<input type="checkbox"/> 생계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의료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주거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밖의지원( <input type="checkbox"/> 연료비 <input type="checkbox"/> 전기요금 <input type="checkbox"/> 장례비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산비 )		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타지원연계	<input type="checkbox"/> 국민기초수급자	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복지공동모금회					
		<input type="checkbox"/> 보건소(암, 희귀난치성질환 등)	<input type="checkbox"/> 자자체자체 지원사업					
		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기관·단체 연계지원	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한적십자사					
		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청 차상위 교육급여	<input type="checkbox"/> 한부모가족지원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<input type="checkbox"/> 차상위 의료비 경감대상자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지원불필요	<input type="checkbox"/> 위기상황비해당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기준초과		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총재산기준초과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일사유의 기지원		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재산기준초과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타지원연계							

(뒷면)

현장확인 내용	확인자 의견	〈공적부조 등 보장내역, 지원이력, 현재상황 등 상담으로 확인된 전반적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〉
<p><b>유의사항</b></p> <p>1.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「형법」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 <p>2.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. 본 확인서에 기재한 내용이 둘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달리 형사상,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</p> <p>3.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의          가. 개인정보 활용 목적          본 확인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3조 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신경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.          나.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        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, 소득·재산·근로능력·취업상태에 관한 정보,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, 그밖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·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(본인, 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), 금융·국세·지방세·토지·건물·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·출입국·병무·보훈급여·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경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을 통하여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          다.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        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(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),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.</p> <p>4. 긴급복지지원 요청을 위해 작성·제출하신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</p>		
긴급지원대상자: <span style="float: right;">(서명 또는 인)</span> 위와 같이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8조(현장확인 및 지원)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요청(신고)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. 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: <span style="float: right;">(서명 또는 인)</span> 또는 대리 현장확인자:(관계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성명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		

[서식 2호] <일부변경>

## 긴급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

긴급지원 대상자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	
취업상태	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상시근로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임시·일용직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영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
	직장(사업장)명			
	직장(사업장)주소	(전화: )		
월소득	일당제	1일 임금: 월평균 근로일수:	원 일	
	월급제	월평균 총급여:	원	
	자영업	월평균 총소득:	원	
	기타	월평균 총소득:	원	
본인은 위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신고합니다.				
20 년 월 일				
신고자: (서명 또는 인)				
<b>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</b>				
<small>※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5조</small>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고,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함				

## 소득·재산 신고서 [□신규 □변경]

\* 아래 소득, 재산,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.

가구원 성명 <sup>1)</sup>								
소 득 사 항	근로 소득	상시근로	원	원	원	원	원	
		일용근로	원	원	원	원	원	
	사업 소득	농업소득 (주재배작물명)	(	원)	(	원)	(	원)
		임업소득	원	원	원	원	원	원
		어업소득	원	원	원	원	원	원
		기타(자영업)	원	원	원	원	원	원
	재산 소득	임대소득	원	원	원	원	원	원
		이자소득	원	원	원	원	원	원
		연금소득	원	원	원	원	원	원
	기타 소득	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(□무료임대)	원	원	원	원	원	원
공적이전소득 <sup>2)</sup>		원	원	기타 (자체 지원금등)		원	원	
재 산 사 항	건축물 (주택, 건물, 시설물)			원	토지	원		
	선박			원	입력재산	원		
	항공기			원	어업권	원		
	자동차	<input type="checkbox"/> 차량명( )		<input type="checkbox"/> 용도 (생업용/장애인용/자가용)				
	임차보증금	<input type="checkbox"/> 전·월세보증금( 원)		<input type="checkbox"/> 상가보증금( 원)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원)	원		
	금융재산					원		
	동 산	<input type="checkbox"/> 소 ( 마리,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돼지( 마리,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가축( 마리,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종묘(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계·기구류(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원)			분양권	원		
					조합원 입주권	원		
					회원권	원		
		기타 산정되는 재산	소계 (A-(B+C+D))				원	
(A) 일정기간 <sup>3)</sup>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기액						원		
(B)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				원				
(C) 부채 상환액				원				
(D) 의료비 등 개별기구원이 소비한 금액				원				
부 채	금융기관 대출금	원	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		원			
	임대보증금				원			
	개인간 부채	<input type="checkbox"/> 판결문·화해·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( 원)			원			
기 구 특 성 지 출 비 용 <sup>4)</sup>	<input type="checkbox"/>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(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·피부양보조금 (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%에 해당하는 금액 (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학생 본인의 근로·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( 원)				원			
	위와 같이 소득·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.				년 월 일			
				신청인(대리신청인):	(서명 또는 인)			
	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·교육감 귀하							

1)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

2) 공적이전소득 :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·연금·급여·기타 금품

3)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/ 기초생활보장은 2021년 7월 1일 이후(다만,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은 조사일로부터 5년)

4) 기구특성지출비용 :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기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.

## 금융정보 등(금융·신용·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



### 1.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

관 계	성 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 등)
		_____ - _____

### 2.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(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)

\* 유의사항: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.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(인감 포함)으로 대신합니다.

세대주와 의 관 계	동의자 성 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 등)	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<sup>1),2)</sup> (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·인감)	금융정보 등의 제공 시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 <sup>3)</sup> (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·인감)
		_____ - _____		
		_____ - _____		
		_____ - _____		
		_____ - _____		

- 1)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, 맞춤형 급여 안내,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·국토교통부장관·교육부장관·여성가족부장관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·특별시교육감·광역시교육감·특별자치시교육감·도교육감·특별자치도교육감(관련법에 따른 위탁 업무수행 기관장 포함, 이하 '보건복지부장관 등' 이라 한다)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2)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3)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.(만일 통의하지 않으면,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. 단,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 「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」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.)

### 3.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,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: 뒷면 참조

4.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: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(맞춤형 급여 안내,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유효기간)까지,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 까지
5. 정보제공 목적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 「기초연금법」, 「장애인연금법」, 「긴급복지지원법」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, 「아이돌봄지원법」, 「장애인아동 복지지원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의료급여법」, 「주거급여법」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·확인조사 지원, 맞춤형 급여 안내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위한 수급기능성 확인,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

20 \_\_\_\_\_ 년 \_\_\_\_\_ 월 \_\_\_\_\_ 일

■ 금융기관장·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

## 금융기관 등의 명칭

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
  - 1)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
  - 2)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  - 3)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  - 4)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  - 5)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
  - 6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증권업자·투자증개업자·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·증권금융회사·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
  - 7)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
  - 8)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
  - 9) 「수산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
  - 10) 「신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웅협동조합 및 신웅협동조합중앙회
  - 11)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
  - 12)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  - 13)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
  - 14)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
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: 전국은행연합회 등

## 금융정보 등의 범위

## 1. 금융정보

- 1) 보통예금, 저축예금, 자유저축예금,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: 3개월 이내 평균 잔액, 3개월 입금액 총액\*  
\*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
- 2) 경기예금, 경기저축 등 저축성예금: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
- 3) 주식, 수익증권, 출자금, 출자지분, 부동산(연금)신탁: 최종 시세가액
- 4) 채권, 어음, 수표, 채무증서, 신주인수권증서, 양도성예금증서: 액면가액
- 5) 연금저축: 경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
- 6) 1)부터 5)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, 배당 또는 할인액

## 2. 신용정보

- 1)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
- 2)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

## 3. 보험정보

- 1) 보험증권: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
- 2) 연금보험: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경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

## 유의사항

-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·기피할 경우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2조제8항, 「기초연금법」 제11조제4항, 「장애인연금법」 제9조제8항,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의3제3항, 「주거급여법」 제14조, 「아이돌봄지원법」 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.
- 이 동의서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1조, 「기초연금법」 제10조, 「장애인연금법」 제8조 및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1조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0조의2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5,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의3제2항, 「주거급여법」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.  
한후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3조 및 「기초연금법」 제11조제2항, 「장애인연금법」 제11조,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의3제3항, 「주거급여법」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  
어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동의자(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)의 금융정보 등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, 「기초연금법」 제12조제6항,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3조제7항 및 「장애인연금법」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2조의3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0조의3제6항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5조제6항,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의3제3항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6, 「주거급여법」 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제작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자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  
공되지 아니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 
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## 진료비[비급여]확인 신청서 (보장기관용)

확인신청하는 보장기관	보장기관명칭: 주소 및 담당부서: ( )		보장기관번호:								
	담당자	성명: 전화번호:	휴대전화번호:								
	환불결정시 입금가능계 좌	은행명: 계좌번호: ※ 개인 계좌는 제외함	예금주:								
	수신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신원함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신원치 않음 ※ 문자 수신을 원하실 경우, 처리과정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.									
	이메일 수신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신원함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신원치 않음 이메일: @ ※ 이메일 수신을 원하실 경우, 진료비확인 관련 문서는 우편발송 하지 않음.									
	긴급지원 대상자	성명:		주민등록번호: (외국인등록번호)							
	진료비확인결과 통보받을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긴급지원대상자와 동일 (긴급지원대상자와 통보받을자가 같은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안에 ✓ 체크) 성명: 주민등록번호: (외국인등록번호) 전화번호: 휴대전화: 주소: ( ) 긴급지원대상자와의 관계:									
	환불결정시 입금가능계좌	은행명: 계좌번호: ※ 예금주는 긴급지원대상자 또는 통보받을 자에 한함	예금주:								
진료받은 병의원 보험자 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건강보험 <input type="checkbox"/> 의료급여										
확인요청 내용	<input type="radio"/>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										
구비서류	1. 진료비계산서·영수증(중간계산서 제외) ※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확인요청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과 약제비 계산서·영수증 첨부 2. 긴급의료지원대상자의 위임장(인감날인 또는 무인날인, 자필서명) 및 인감증명서 - 무인날인 또는 자필서명 시 인감증명서는 제출 제외 3. 긴급의료지원대상자와 통보받을자가 다른 경우 - 통보받을자가 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및 그 배우자, 형제자매인 경우: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 ※ 진료비(비급여)확인 신청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상세사항 [별지] 참조											
우리원은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[별지]와 같이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. 아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진료비(비급여) 확인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.											
[필수]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	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							
[선택] 이메일	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							
[선택] 계좌번호	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							
상세사항 [별지] 참조											
[국민건강보험법] 제48조 및 [의료급여법] 제11조의3에 의거 진료비확인신청 업무처리를 위하여 진료비(약제비)계산서·영수증을 진료받은 기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			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cccccc;">항목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cccccc;">수집목적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cccccc;">수집근거</th> <th>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민등록번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요양(의료)급여대상여부의 확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81조 및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 제21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함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항목	수집목적	수집근거		주민등록번호	요양(의료)급여대상여부의 확인	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81조 및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 제21조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함
항목	수집목적	수집근거									
주민등록번호	요양(의료)급여대상여부의 확인	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81조 및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 제21조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함								
※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합니다.											
20 년 월 일      확인요청자 : (직인)											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											

## 관련 동의사항 상세내용

구분	내용
진료비(비급여)확인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<p>우리 원은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: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8조 및 「의료급여법」 제11조의3에 따라 진료비 확인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확보</li><li>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: [필수]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, [선택] 이메일, [선택] 계좌번호</li><li><b>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: 5년</b></li><li>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할 경우 진료비(비급여)확인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.</li></ol>
진료비 영수증 (진료받은 기관) 제공에 관한 동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영수증을 제공받는 자 <b>진료받은 기관</b></li><li>○ 제공 받는자의 이용목적 <b>진료비확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진료받은 기관은 진료비 영수증을 제공받아 진료비세부내역 자료를 우리원으로 보낼 때 비급여(전액 본인부담 포함)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영수증을 참고하며, 본 목적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</b></li><li>○ 제공하는 영수증 항목 [필수항목] 진료비(약제비)계산서·영수증 [제외항목] 수진자 고유식별정보 (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)</li><li>○ 영수증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<b>진료받은 기관은 진료비확인신청 결정사항 통보일까지 영수증 정보를 보유 및 이용합니다.</b></li><li>○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불이익 내용 진료비 영수증을 진료받은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확인신청 업무 진행시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/li></ul>

< 보장기관용 >

위임장						
위임하는 사람 (긴급 지원 대상자)	성명		생년 월일		전화 번호	○자 택 : ○휴대전화 :
	주소	( )				
	환불금 입금 계좌	은행명:			예금주:	
		계좌번호:			※ 진료비확인 결과 환불금 발생시 입금할 수 있는 본인의 계좌번호 기재	
위임 받는 사람	보장기관의 장				전화 번호	○사무실: ○휴대전화 :
	주소	( )				
위임 내용	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(의료급여법 제11조의3)에 의한 진료비 확인요청 [요양(의료)급여대상여부 확인 등] 위임내용					
	구분	위임 내용				위임함
	1	진료비확인요청 접수에 관한 사항				<input type="checkbox"/>
	2	이의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				<input type="checkbox"/>
	3	심판청구(행정심판) 접수에 관한 사항				<input type="checkbox"/>
	4	진료비 영수증 (진료받은 기관) 제공에 관한 사항				<input type="checkbox"/>
※ 상기 항목에 위임하시는 경우 위임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진료비 영수증 (진료받은 기관)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23조제1호에 의거 진료비확인요청 업무처리를 위하여 진료비(약제비) 계산서·영수증을 진료받은 기관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. ※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함이 가능하며,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및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(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1조)에 따라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를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						
위와 같은 사실을 위임합니다.						
20 년 월 일						
위임하는 사람 : (인감인)						
※ 첨부서류 : 위임하는 사람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1부. - 주: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「본인서명사실 확인서」로 대체 가능, 이 경우 "인감인"에 본인서명 날인						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						

##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, 제공 동의서

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,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, 제3자 제공 목적,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안내 드리오니 자세히 읽은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□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(일반개인정보)

항목		수집목적	보유기간
필수	- 대상자 정보(성명)		
선택	- 대상자 정보(성별, 나이, 연락처, 보장내역, 자격,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 정보, 소득 재산소계 등) - 가구구성 정보(성명, 주소, 직업, 보장내역, 연락처 등)	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	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종결 후 5년

\*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

### 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(고유식별정보)

항목	수집목적	보유기간
(대상자) 주민등록번호*(외국인등록번호) (가족 구성원) 주민등록번호*(외국인등록번호)	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	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종결 후 5년

\*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는『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』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집이용

☞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

### 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(민감정보)

항목	수집목적	보유기간
-『개인정보보호법』 제23조 제1항 각 호와 동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민감정보* (예 : 건강 상태/ 주거 사항/ 경제 상황/ 가구 구성 등 생활 실태)	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	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종결 후 5년

\* 민감정보는『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』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집이용

☞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

### 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

제공받는 기관	제공목적	제공하는 항목	보유기간
- 사례관리 담당자 - 사례회의 참석자(기관) - 서비스 제공기관(기관명) .『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』제2조에 따른 보장기관 및 제51조 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공공기관 . 동법 제162조항에 따른 관계 기관법안단체·시설	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	- 대상자 정보 (성명, 주민등록번호*, 연락처, 주소) - 가족구성원 정보 (성명, 연령, 둘거여부, 연락처) - 사례관리 정보 (가족력, 개인력, 서비스 제공이력 등)	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종결 후 5년

\* 주민등록번호는『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』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집·이용

\* 위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

※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

(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등(민법 제5·10·13조))

- 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 예  아니오
- ☞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 예  아니오
- ☞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 예  아니오
- 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 예  아니오

년   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   일

본인              성명  
법정대리인      성명

(서명 또는 인)  
(서명 또는 인)

년   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   일

본인             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##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경상남도 김해시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주민생활지원대상자 조사 및 관리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연번	행정정보명	연번	행정정보명
1	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(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)	7	폐업사실증명
2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8	휴업사실증명
3	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(상용)	9	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
4	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	10	병적증명서
5	사업자등록증명	11	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
6	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	12	해외이주신고확인서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
(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) 번호 :

### 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-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 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대상자      본인

성     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

전화번호 :

## **금융재산 및 사보험 가입 관련 확인서**

○ 신청자 인적사항

- 성              명 :

- 생    날    월    일 :

- 주              소 :

상기 본인은 긴급복지지원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가족명의로 되어 있는  
금융재산(현금,수표,어음,주식,증권,예금,적금 등)이  
600만원 이하 임을 확인합니다.

긴급의료비 신청 시 사보험(질병,상해 등)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, 긴급복지  
의료비 지원대상이 제외됨을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았습니다.

향후 조사결과 상기 사실과 다를시 모든 책임을 질것이며, 기 지원받은  
긴급지원비를 모두 반환할 것을 서약 합니다.

위 확인자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김해시청 귀하

## 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소득·재산 체크리스트

성명				생년월일			
주소							
주거형태	자가		전세		월세	무료 임차	기타

1. 소득은 아래 표의 가구원수 기준 이하입니까?

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 아니오

\* 소득 기준

가구규모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원/월	1,558,419	2,592,116	3,326,112	4,050,723	4,748,016	5,420,986

2. 재산은 15,200만원 이하입니까?

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 아니오

3. 금융재산(현금, 수표, 어음, 주식, 국공채등유가증권, 예금, 적금, 부금, 수익증권) 600만원 이하입니까?

\* 단, 주택청약저축, 보험 제외

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 아니오

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긴급지원대상자

(서명 또는 인)

김해시장 귀하